

#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조상호 의원입니다.
  
- 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  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2호  
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  
- 현행 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8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, 예·결

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, 계획서, 명세서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,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